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85
----------	-------

발의연월일 : 2019. 4. 24.

발의자 : 심상정 · 윤소하 · 천정배
이용주 · 김관영 · 김동철
김성식 · 장병완 · 김종민
기동민 · 이철희 · 원혜영
김상희 · 박병석 · 박완주
최인호 · 홍영표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역구 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

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60조).
-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 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안 제49조제2항).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사.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에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아.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

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함(안 제200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舉”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순위의 후보자 수는 1명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별 후보자의 총수가 정수범위의 100분의 120 이내가 되도록 추천할 수 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

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석패율 적용순위 지정) ①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제189조제5항에 따른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다.
- ③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다.
-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하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권역 안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변경하여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를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의 모든 석패율 적용순위에 등재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후보자명부”를 “후보자명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권역별로 작성된 후보자명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서류”를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3.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4.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

제5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라 제출한 내부규약 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를 “등록 신청시에 후보자(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이 장(章)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본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의석정수”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석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제3항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begin{aligned} \text{연동배분} &= [(\text{국회의원정수} - \frac{\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 \text{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quad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quad - \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div 2 \end{aligned}$$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 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 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begin{aligned} \text{잔여 배분의석수} &= (\text{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times \text{비례대표국회 의원 선거 득표비율} \end{aligned}$$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의석수} &= \text{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 \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 \\ &\div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ligned}$$

③ 의석 할당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수”라 한다)은 정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 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 \quad \text{정당이 추천} \\ \text{연동배분} & = [(\text{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 \text{의석수} & \quad \times \text{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text{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div 2 \end{aligned}$$

2.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에 의 한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 & = (\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 \text{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quad \times \text{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end{aligned}$$

3.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조정의석수”이라 한다)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ligned} \text{권역별 조정의석수} &= \frac{\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text{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 &\quad \times \text{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end{aligned}$$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한다.

⑤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국회의원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3.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제190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9조제4항 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 ·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94조제3항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를 “의석을 재배분하고, 정당 및 권역별 재배분 의석 수에서 각 정당 및 권역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사퇴·사망하거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로서 같은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 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7조제7항 중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00조제2항 본문 중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를 “권역별 비례 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로서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 · 제3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30조제6항 중 “제47조의2제1항”를 “제4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현·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選舉管理委員會(이하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號와 같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
1. 大統領選舉 및 比例代表全國選舉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舉의選舉區選舉事務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18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② 18세-----.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 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 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 여 300명으로 한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 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 여 30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舉區別 로 選舉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 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u>비례대표자치</u> <u>구·시·군의원의</u>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 -----정수범위(제47조의2 에 따라 석폐율 적용순위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순위의 후보자 수는 1 명으로 본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 별 후보자의 총수가 정수범위의 10 0분의 120 이내가 되도록 추천할 수 있고, <u>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u> 의----- ----- -----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	

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p>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 <u><신설></u></p> <p>제47조의2(석패율 적용순위 지정) ①</p> <p>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제189조제5항에 따른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다.</p> <p>③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다.</p> <p>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에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하고 제50조제1항 단서</p>
--	--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생략)	<p>제47조의3(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현행 제47조의2와 같음)</p> <p>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생략)</p> <p>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	---

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
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
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확
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⑨ ~ ⑯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 ② (생략)

③ 候補者가 같은 選舉의 다른
選舉區나 다른 選舉의 候補者로
登錄된 때에는 그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⑨ ~ ⑯ (현행과 같음)

52조(등록무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라 정한 내부규약 등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 9. (생략)

② (생략)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 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1. (현행과 같음)
 2. ----- 18세 -----

 3. ~ 9. (현행과 같음)

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

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
석 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
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 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제3항
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

1. 각 의석 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
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
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
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
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
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 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begin{aligned}
 & \text{연동배분의석수} = [(\text{국회 의원 정수}) - \frac{\text{의석 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 구국회의원당선인수}}{\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div 2
 \end{aligned}$$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 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 배분 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begin{aligned}
 & \text{잔여 배분의석수} = \frac{(\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text{비례 대표 국회의 원 선거 득표비율}}
 \end{aligned}$$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
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
(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
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
을 준용한다.

$$\begin{array}{rcl} \text{조정의석수} & = & \frac{\text{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 \\ & & \div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rray}$$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 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
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
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
(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
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
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
이의 추첨에 의한다.

③ 의석 할당정당에 대한 권역별 비
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하 이 조에
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수”라 한다)은 정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연동배분의석
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
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권역
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
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

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권역별연동배분의석수 정당
이 추 천한 제2항에 따라 정당
지역 구국 + 배분한 총 비례
회의 원당 대표국회의원 의석
선인 수

\times 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div 2$

2.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
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
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
분할 잔여 의석수(이하 이 조에
서 “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한
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
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
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에
의 한다.

$$\begin{array}{lcl} \text{권역별 잔여 배분 의석 수} & = & (\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 \\ & & \text{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 \times \text{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end{array}$$

3. 제1호에 따른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권역별 조정의석수”이라 한다)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rray}{lcl} \text{권역별 조정의석수} & = & (\text{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times \text{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 \\ & & \div \text{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rray}$$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한다.

<신 설>

⑤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 국회의원의 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 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3.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p><u>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u></p>
<u>⑤ (생 략)</u>	<p><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p>
<p><u>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 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u></p>	<p><u>⑦ -----</u></p>
<p><u>⑦ · ⑧ (생 략)</u></p>	<p><u>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u></p>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 ⑥ (생략)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

(4) 재배분하고, 정당 및 권역별 재배분
의석 수에서 각 정당 및 권역이 제18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
선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大統領權限代行者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國會議長은 國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 및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

-----. 다만,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로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로서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第223條(當選訴訟) ① -----

<p>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 · ⑧ (생 략)</p> <p>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p> <p>-----</p> <p>----</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u></p>
<p>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罪로 인한 當選無效) (생 략) <u><신 설></u></p>	<p>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罪로 인한 當選無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제189조제5항에 따라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u></p>